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 판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s Case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Link

김 지 영, 김 인 철
상명대학교

Jiyoung Kim, Inchul Kim
Sangmyung University

요약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서론

2015년 3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은 너무 과도하게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들게 만들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현재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링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범도 아니고 교사 또는 방조침해까지 부인하여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침해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결은 링크가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자의 권리는 지나치게 축소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은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판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우리나라에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논의할 때에 도움은 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유럽의 링크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 Svensson 사건

스웨덴에서 4명의 원고들이 신문에 글을 기고하였으며 그 글들은 해당 신문사의 웹사이트에도 게시가 되었으며 그 글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였다. 피고는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다른 신문사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놓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이 사건 상황에 비추어보면 아무런 접근의 제한이 없는 사이트에 게재된 보호받는 저작물을 링크한 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act of communication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호받는 저작물을 링크로 제공한 행위는 전달행위(making available 또는 act of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 또한 공중에 제공을 해야 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운영자가 제공하는 링크는 그 사이트의 모든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사이트 운영자는 전달행위를 한다고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지침상의 communication to a public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서 최초 송신 이후에 기술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 저작권자가 최초에 송신을 허락한 공중을 제외한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인 링크를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에게 송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래 사이트가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송신 대상의 공중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통하여 그 저작물에 접근 할 수 있는 사용자는 결국 저작권자가 처음 전송할 때에 예견했던 이용자에 해당하며, 새로운 공중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communication to the public 할 수 있다.

반면에, 원래 사이트가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링크를 통하여 우회하게 되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저작권자가 최초에 송신을 허락하지 않은 새로운 공중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그 저작

물이 최초에 제공되었던 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된 공중에게 제공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2. Bestwater 사건

원고는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영상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이 영상은 누군가에 의하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1]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 판매를 위하여 각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동영상을 유튜브의 임베딩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임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 사건 비디오를 유튜브 서버에서 바로 재생시킬 수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른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되거나 저작권자가 원래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허용했을 때의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작물이 이미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communication to the public로 볼 수 없고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저작물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에 있으면서도 마치 링크가 있는 사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상을 준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communication to the public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1]

결과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프레임 기술을 이용한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임베딩 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

3. GS Media 사건

Sanoma와 Dekker는 GS Media가 하이퍼링크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것은 Mr. Hermes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Sanoma와 Dekker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별적 평가를 위하여 세 가지 보충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링크를 설정한 사람의 중요성과 이 행위의 고의성인데, 링크 설정자는 저작물을 자신의 이용자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 전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중의 개념은 링크를 이용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불특정 다수이어여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communication to the public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은 독자적으로 적용하거나 서로 결합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수익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공중 전달이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저작물이 공개되었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링크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고, 또한 링크를 통하여 기술적 우회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개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점검의무가 링크를 제공한 사람에게 있다고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단하였다. 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깰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인터넷에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Ⅲ. 결론

해당 판결들 이후에 유럽에서는 링크가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된 경우에는 게시자는 링크하기 이전에 링크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게 되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상업적이란 의미가 링크 자체에서 얻는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링크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얻는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논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새로운 공중'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중의 정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며 '수익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도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의 및 과실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희영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info/trendbriefing/detail.do?brdctsno=39865〉, 2016.

[2] Nauta Dutilh, "Does embedding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CJEU provides guidance in Bestwater",〈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36861a1-888f-4bbe-bf4c-6dd01730acbd〉, 2014.

[3] Eliska Macnerova, Susan McLean, "European Court Rules that Hyperlinking May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2017.